



마 산 합 포 구



수신 (주) 로봇태양광 발전소 귀하
(경유)

제목 개발행위(공작물설치) 허가 알림

개발행위허가(공작물 설치) 신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개발행위허가 협의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허가내역

신청인	위치	용도지역	공작물 설치 현황		사업기간
			신청면적	목적	
로봇태양광	창원시	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	13,519㎡	태양광발전 설비 설치	허가일로부터 ~2025.3.14.까지

붙임 개발행위허가(협의)조건 1부. 끝.

마산합포



주무관 [Redacted] 행정안전과장 [Redacted] 2024. 5. 29.

협조차

시행 건축허가과-12477 (2024. 5. 29.) 접수

우 51736 [Redacted]

배전용전기설비이용 고객 신청 접수증명서

접수번호	5690-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계약번호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
발전사업자	고객명	로봇-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상호	로봇-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	대인번호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전화번호	02-556-1504
	주소	지번	경상남도 창원시-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이용희망일
도로명				2024-08-15	

전기방식	840 삼상4선(22.9kV-y)		용도	01 발전	
이용장소	경상남도 창원시-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	
계약전력	2998		발전권	01 태양광	
주생산품			설비유형	3 일반선로(한전)	
고객구분	03 발전사업자		적용약관(규정)	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	
전력거래형태	전력시장거래				
사용전 점검기관	3 안전공사(자가용/전기사업용)		내선업체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
시설부담금	3 설계조정시설부담금		공사형태	2 외선소요	
설비관리자명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연락전화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
SMS 수신번호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	

※ 배전용전기설비이용 신청 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

- 적용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, 위와 같이 배전용전기설비이용 신청을 합니다.
-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본 이용신청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취소됩니다.
- 접속점 협의 요청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, 접속제외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접속제외에 대한 수락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, 수락 의사 통지 후 2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.
- 계약전력 1MW 이하의 고객은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개발행위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용량을 변경하여 발전설비를 설치 할 경우(발전산업 허가용량 10% 이내 포함) 이용계약을 변경 하여야 합니다. 특히 설비용량을 증설하여 설치 할 경우 공사계획 신고 전 이용계약 변경을 하여야 하며 이용계약 변경 없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발전설비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규정 72조에 의거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배전용전기설비이용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2024년 05월 16일

경남본부 마산지사장



대출의향서

로봇 [redacted] 귀종

당사는 귀사가 경상남도 창원시 [redacted] 일원(이하 "사업부지")에서 추진 중인 "로봇 [redacted] 이하 "본 사업")에 대한 금융조달과 관련하여, 본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검토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고, 펀드 투자자의 내부 승인 및 당사의 규정에 따른 최종 승인을 전제로 다음의 조건으로 투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투자 조건

- 투자대상: 사업부지 내 설비용량 2,998.32kW 태양광 발전사업
- 대출의향금액: 45억 원(1MW [redacted])
- 유효기간: 본 의향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
- 상세조건: 기술실사, 사업성평가 및 당사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조건부
- 기타: 허가 용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투자 규모 재산정 가능

2024년 06월 04일

KDB인프라자산운용(주)

대표이사 [redacted]



경 상 남 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전기(발전)사업 허가사항 알림[로봇 [redacted] 태양광발전소]

1. 귀 사의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사업을 허가하오니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전기사업 허가 내역

허가번호	제2024-[redacted]	허가일자	2024. 4. 22.
상 호 (명 칭)	로봇 [redacted]	사업의 종류	태양광 발전사업
대 표 자	[redacted]	법 인 번 호	[redacted]
주 소	경상남도 창원시 [redacted]		
설치장소	경상남도 창원시 [redacted]		
전기설비	설비용량 : 2,998.32kW / 연계전압 : 22,900V / 설치위치 : 토지 위		
준비기간	2024. 4. 22. ~ 2025. 10. 21.(18개월)		

2. 아울러, 상기 사업 준비기간 내에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(사업개시 후 30일 이내)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3. 또한 전기사업 허가는 전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며, 이후 불임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개별법에 따른 인·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붙임 1. 전기(발전)사업 허가증 1부.
 2. 검토의견서(창원시) 1부.
 3. 검토의견서(한국전력공사) 1부.
 4. 사업자 유의사항 1부.
 5. 계통연계 유지기능 보유 의무화 안내문 1부.
 6. 태양광인버터 설정치 협조요청 안내문 1부. 끝.